

I. 중국 게임 관련 기관 및 업체

I -1. 기관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신문출판총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新闻出版总署))

1. 기관 연혁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 설립.

당시 국가판권국으로 명명. (문화부 소속의 국가 기구)

1985년: 6월 28일, 문화부는 국무원에 문화부 내 국가판권국을 설립하자는 건의를 제출.

7월 25일, 국무원에서는 문화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화부의 기존 출판국을 국가출판국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

국가출판국과 국가판권국은 한 개 기구, 두 개의 명칭을 사용하며 직원 50명을 충원하여 문화부의 임직원이 1,241명에서 1,291명으로 증원됨.

당시 국무원에서 국가판권국에 부여한 주요기능

△판권법률과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감독 담당.

△판권 소유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국가를 대표하여 섭외 판권관계를 처리.

△전국의 판권관리 업무 담당.

국가판권국 국장은 국가출판국 국장이 겸임하며 국가판권국 제1대 국장은 벤춘광(边春光)임.

1987년: 1월, 국무원에서는 문화부 소속 국가 판권국을 철수하고 국무원 직속의 신문출판서를 설립하기로 결정.(그러나 국가판권국 명의를 유지하여 실체는 1개 기구이면서 명의를 2개로 사용)

12월, 중공중앙조직부에서는 신문출판서 부서장 송무원(宋木文)이 국가판권국 국장 직무를 겸임하고 류구젠(刘果兼)이 부국장을 담당.

1991년: 1991년 5월 24일 발표, 1991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행 조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판권국의 기능을 규정.

1993년: 선런간(沈仁干)을 국가판권국 부국장으로 임명.

1993년: 5월, 위여우셴(于友先)이 신문출판서 서장 겸 국가 판권국 국장으로 임명됨.

1998년: 1998년 실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에서는 국가판권국과 신문출판서는 여전히 한 개 기구, 두개 명칭을 사용한다고 규정.

국가판권국 현임 국장은 위여우셴, 부국장은 선런간이다.

국가판권국의 업무는 주로 판권사에서 담당하며 판권사는 현재 6개 부처(내부 설립



한 국제, 행정부의 2개 처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장(司長)은 왕화펑(王化鵬), 부사장은 쉬초우(许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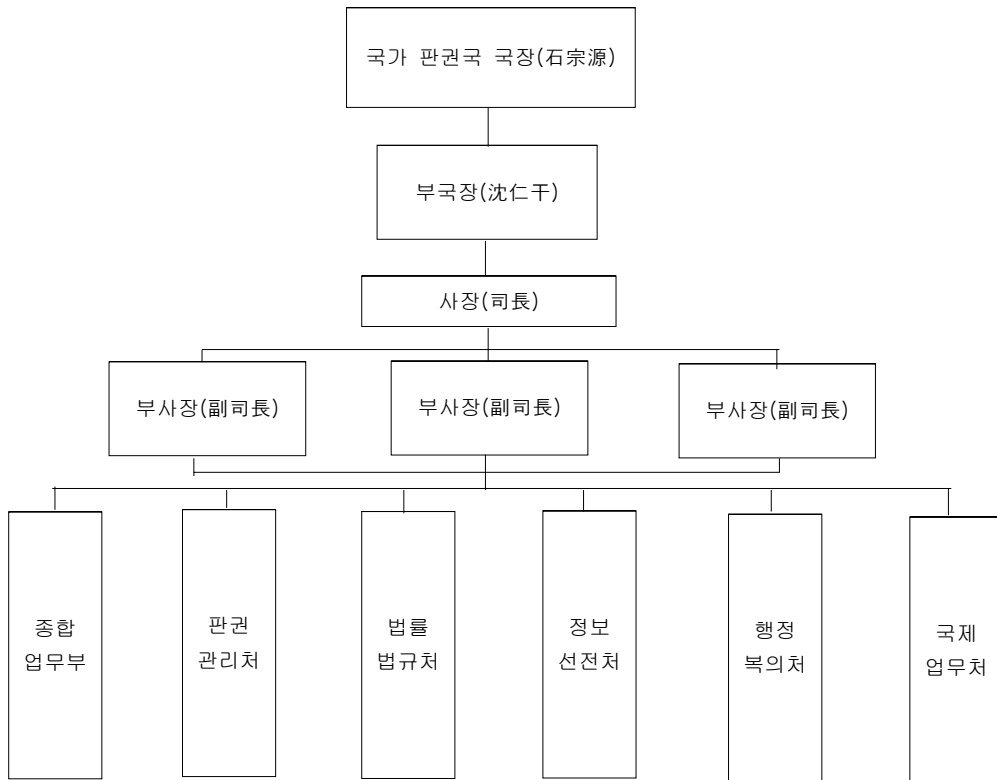
2000년: 10월, 스중웬(石宗源)이 신문출판서 서장을 담당하고 동시 국가판권국 국장을 겸임. 선린간이 계속하여 국가 판권국 부국장직무를 담당.

2001년: 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은 정부급 기구로 승급되고 신문출판총서로 개칭함. (여전히 한 개 기구에 두 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2. 국가 판권국 주요 직능

- 1) 저작권 법률, 법규를 실시하고 저작권 행정관리와 관련된 방법을 제정한다.
- 2) 전국의 중대한 영향을 일으킨 저작권 침해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 3)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사업을 지도한다.
- 4) 저작권 통합관리기구, 섭외대리기구 설립을 비준하는 동시에 기구의 업무를 감독 및 지도한다.
- 5) 국가의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의 사용을 관리한다.
- 6) 저작권 섭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7) 국무원에서 교부한 기타 저작권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국가 판권국 조직도





4. 신문출판총서

국가신문출판서(국가관권국)는 9개 직능사(실)를 설치하고 있다.

1) 관공실(정책법규사, 기획재무사)

국가신문출판서의 정무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비서, 공문서, 요점, 비밀, 보안, 서신방문, 후방근무 등 행정관리 사업을 담당하며 신문출판 정책의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신문출판 입법 건의를 제안한다. 행정 재심의와 기타 법률 법규사항을 담당하고 국내외 신문출판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신문 출판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한다. 신문출판 산업의 통계제도를 제정·시행하고 신문출판 산업의 발전기획 및 연도계획을 제정하는 한편 신문출판 산업에 대한 국가의 경제정책 제정 및 관련 경제성 거시 조정에 참여한다. 또한 신문출판업체의 제품구조,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국가신문출판서 소속 국가소유 자산을 관리감독 한다.

2) 도서출판관리사(고서정리출판기획사무실)

도서출판에 관련된 정책, 규정을 채택하고 도서출판사의 출판 규모, 구조 및 분포계획을 제정한다. 도서출판사의 설립, 전문 분업 및 주요 항목변경의 심사사업을 담당하고 국가 중점 도서출판 계획을 제정·시행하며 출판사의 연도 출판계획과 주요 테마 사항 선택을 담당한다. 도서출판사 연도검사와 도서품질 감독 및 도서 심독(审阅)을 책임지고 불법도서 및 도서출판사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를 조직한다. 전국 도서출판 기금을 관리하고 도서 품목 및 도서 번호 총 규모를 제어하는 한편 국가 고서정리 출판기획을 전담한다.

3) 신문, 주간 출판관리사

간행물의 총 규모, 구조 및 분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신문사 또는 신문그룹 설립, 신문사 지사기구 및 간행물 명칭변경의 심사와 주요 테마 선정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신문사, 간행물업체 연도검사와 품질감독을 책임지며 간행물 심독을 조직하고 불법 신문과 신문사, 간행물 출판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전국 신문기자증을 관리하고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신문발표회의 등록사업을 담당한다.

4)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관리사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정책을 채택하고 출판사의 출판 규모, 구조 및 분포 기획을 제정하며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복제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의 설립 심사사업을 담당한다. 국가 중점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기획을 제정·시행하고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주요 테마 사항 선정을 책임진다. 음반제품, 전자출판물 출판 및 복제업체의 연도검사,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품질감독을 책임지고 심독사업을 감독·조직한다. 불법 음반제품과 불법 전자출판물, 출판 및 복제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 품목 및 총 규모를 제어한다.

5) 출판물발행관리사(출판물시장“음란물 소탕”, “불법타격”관공실)

출판물시장에 대한 거시 제어정책 및 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출판물 총 발행업체의 사업을 심사하며 대학, 중학교, 초등학교의 교과서발행 사업을 협조·유도 및 관리한다. 전국성적 출판물 전시회, 주문회의 및 서적시장을 심사·유도하고 불법출판 활동, 불법출판물을 조사 처리하며 출판물시장의 “음란물 소탕”, “불법타격”사업의 취지, 정책, 계획을 연구·제출

하고 출판물시장의 “음란물 소탕”, “불법타격”활동과 안전 처리사업을 담당한다.

6) 인쇄업관리사

출판물의 인쇄 또는 기타 인쇄물의 인쇄 관련 정책, 법규, 규정 및 인쇄업 발전계획을 제정·시행하고 전국 인쇄업의 연도검사를 유도하며 인쇄경영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신문출판업의 과학연구, 기술진보, 기술 감독에 관련된 정책, 규정 및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출판, 인쇄, 복제, 발행의 전문 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또 국가 단속 인쇄설비의 수입을 심사·협조한다.

7) 인사교육사

신문출판업과 저작권관리팀의 구축 및 인력육성 기획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조직·유도한다. 신문출판 전문기술 인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신문출판 전문기술 직무에 대한 모집사업을 유도하며 신문출판시스템 직업기능 규범화, 교육발전 기획 및 인력교육 기획을 제정한다. 직속 고등학교의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기관간부와 직속업체 간부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며 기관 및 직속업체 노동 노임, 기구편성 사업을 관리한다.

8) 대외합작사

신문출판, 저작권 관련 대외교류와 합작사항을 담당하고 정부 간 문화제정 관련 신문출판, 저작권 항목의 집행사업을 책임지며 신문출판 국제조직, 기구에 참여할 데 관한 의견을 연구·제출한다. 신문출판업체 중외합자업체의 설립과 중외합자업체의 심사사업을 담당하고 출판물 수출입업체의 설립과 유사 기구의 심사사업을 책임지며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국내 및 국외 전시, 판매, 수출입거래를 관리·협조한다.

9) 판권관리사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법규 초안을 제안하고 저작권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저작권 법률,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중국 세계판권공약 가입에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고 중대한 저작권 침해사건과 섭외 저작권 침해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설립사업을 심사·유도하고 작품의 저작권 등기와 법정 허가증 사용을 감독·관리하며 국가 소유 저작권 제품의 사용을 관리한다.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과 관련된 저작권 사항을 담당하고 저작권 쌍무협약 또는 다각적 협약, 협약담판, 비자 등 사업에 참여하며 세계 저작권기구와 연계를 취한다. 저작권 섭외기구의 설립을 담당하고 국내외 저작권리 인증기구를 지정하며 외국과 세계 저작권 조직 중국 사무기구 설립의 심사사업을 책임진다. 재 인쇄 또는 외국제품 번역출판의 심사사업을 전담하고 강제허가증을 발급하며 섭외저작권거래, 섭외 저작권 합동등기, 외국제품 저작권 인증사업을 감독·유도한다.

국가신문출판서(국가저작권)의 기관행정 편성은 총 145명, 그 가운데 서장(겸 국가판권국 국장) 1명, 부 서장 4명, 국가판권국 전직(全職) 부 국장 1명, 정부사장 31명(기관 당위, 전직 서기 포함)이다.

(자료 <http://www.bb.ab.cn/bwb/xwcb.htm#T1>)



2. 북경시 판권국 (北京市版权局)

베이징시 판권국은 주로 베이징시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베이징시 정부 소속이다.

1. 주요 직능

- 1) 베이징 지역에서 저작권 법률·법규를 선전, 실시, 집행하며 본 지역 저작권 행정관리 구체방안을 제정한다.
- 2)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 3) 베이징 지역의 저작권 분쟁을 조정한다.
- 4) 베이징 지역의 저작권 무역활동에 대하여 감독, 지도 역할을 한다.
- 5) 저작권단체 관리기구가 베이징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감독, 지도 역할을 한다.

2. 기구

1) 저작권 행정관리처

저작권 섭외 계약 심사 허락, 등록 및 저작권 대리기구 업무를 담당하고 저작권 집단관리 및 섭외 저작권 무역활동에 대한 관할 및 감독 역할을 하며, 저작권 보호조직의 불법복제판 단속 업무를 관할하여 저작권 보호업무를 진행한다.

2) 저작권 법 집행처 (저작권 쟁의 조정처)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한 권리인 및 사회공중에 대한 침범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한 침범 및 불법복제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처리하며, 베이징 지역에서 발생한 저작권 쟁의 조정을 담당한다.

3. 업무 절차

1) 저작권 행정관리처 및 저작권 법집행처

(1) 저작권 등록절차

- ① 제품 자원 등록절차 : 생략 - 내국인 해당
- ② 외국도서 출판 저작권계약 심사 등록 절차

가. 국가판권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저작권무역에 대한 관련 규정 집행통지”, “외국 도서출판 관련 계약 등록 실시 통지”, “중앙급 출판사의 대만, 홍콩, 마카오 도서저작권 무역계약 관련 심사는 베이징 판권국에서 전담한데 관한 통지” 등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 판권국에서 베이징시의 출판회사들의 외국 및 대만, 홍콩, 마카오 도



서 출판 관련 저작권 무역 계약에 대하여 심사 등록을 진행하며 이 부분 업무는 저작권 행정관리처에서 전담한다.

나. 베이징의 도서출판기구는 외국 혹은 대만, 홍콩, 마카오 도서저작권 무역계약에 조인한 그날부터 7일 내에 계약원본을 베이징시 판권국에 제출하여 심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제출 서류

- 외국도서 출판 계약서(저작권인의 라이선스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 출판기구 담당자가 날인하고 법인도장을 찍은 계약 저작권인의 라이선스 증명서 중문 번역본 1부
- 출판계약서에 언급된 외국도서 및 속 표지, 판권장 복사본 (판권장은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1부
- 요구에 따라 작성된 계약 등록표 1식 3부

라. 베이징판권국은 등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심사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계약서 등록 전용인장을 찍은 후 출판기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동시에 계약서 복사본과 발급한 계약서 등록번호를 국가판권국에 등기해야 한다.

마. 심사등록을 걸친 외국 도서 출판 시 도서 제품 판권장에 반드시 계약서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도서 출판 후 베이징시 판권국에 샘플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베이징시 출판기구에서 외국 도서 출판 시 세트로 출판하게 되는 음반제품 출판 계약도 베이징판권국의 심사등록을 거쳐야 한다. 심사 등록을 거친 음반제품 출판 시 그 음반제품에 반드시 계약서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출판 후 베이징시 판권국에 샘플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 전자출판물 출판, 복사, 판매, 사용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약서 등록 및 인증 절차

가. “전자출판물관리규정”과 국가판권국의 “외국 전자출판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및 복제할 시 저작권위탁계약서의 등록 및 인증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베이징 판권국은 국가판권국 및 국가외화관리국의 위탁을 받아 베이징 내 외국 전자출판물(번역 복사출판을 포함)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복사, 판매사용에 관한 저작권 위탁계약서의 등록, 인증을 책임지고 판권행정관리처가 전담한다.

나. 베이징시에서 외국 전자출판물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복사, 판매 사용할 시 사전에 베이징시 판권국의 심사등록 및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다. 제출서류

- 신청서(전자출판단위 이외)
- 외국출판물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복사, 판매 사용할 데 관한 계약서 (저작권의 위탁서)원본 및 사본 각기 1부
- 신청등록인(회사) 책임자의 날인 및 법인대표인장이 찍힌 외국출판물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복사, 판매 사용할 데 관한 계약서 중국어 본 1부
- 계약서에 언급된 외국 전자출판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샘플 및 상관재료의 원본과 사본 각기 1부
- 계약서 등록표 각각 3부
- 저작권 인증표 1부 (인증표 내의 명칭, 주소는 중문과 영문을 각기 기입하여야 한다.)

- 신청인과 법인대표가 날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문 설명서 1부
 - 신청등록인(단위)의 영업지조 원본과 사본 각 1부
- 라. 전담부문은 자료심사를 통과한 후 저작권 인증표를 국가 저작권 관권국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는다.
- 마. 베이징시 관권국은 접수한 후의 7일 내(국가관권국의 인증시간은 별도로 한다)에 심사등록을 끝내야 하며, 등록에 통과한 계약서에 전용인장을 찍고 본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등록에 통과하지 못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바. 심사등록을 통과한 외국 전자출판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출판, 복사, 판매 사용 시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사전에 샘플을 베이징시 관권국에 송부해야 한다.
- 사. 국가신문출판서가 비준한 비 전자출판물출판회사가 외국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저작권 보호조직

1) 베이징 저작권보호센터

베이징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무역계약 등록 및 외국 저작권 무역계약 인증 등의 업무 담당한다. 베이징지역 간행물의 작품전체 사용료 대행을 전담하며, 저작권 소유자 및 소비자의 저작권 검정신청을 접수하고 저작권 검정의견을 출시한다.

(1) 웹 사이트: <http://www.bjcab.gov.cn>

(2) 부서: ① 사무실

② 저작권 등록부서(010-64206823)

③ 원고료 발송부서(010-64206823)

④ 저작권 검증부서(010-64200324)

⑤ 중국 저작권 웹 사이트: <http://copyright-china.com.cn>

2) 베이징시 저작권보호협회

베이징시 저작권 보호협회는 1993년 설립되었으며, 전문적으로 저작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단법인(사회집단법인)이다. 이 협회는 베이징 지역의 저작권사업자, 법률사업자 및 각 분야의 작가·사용자·방송인 등의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협회는 사회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베이징의 저작권사업 발전을 추진하며 개혁개방·대외문화교류 증진·문학 발전·예술 및 과학사업을 위한 서비스를 취지로 하고 있다.

최고권리기구: 회원대표대회, 상설기구: 이사회, 사무기구: 비서처, 그리고 3개 전문위원회와 4개 전문 서비스기구가 설치되어있다.

2002년 3월 현재 단체 회원기구 54개, 개인 회원 263명을 보유하고 있다.

(1) 명예회장: 허루리(何鲁丽: 전국인민대표위원회 부위원장)

(2) 회장: 린윈이(林文漪: 베이징시 부시장)

(3) 법정대표인: 류둥위이(刘东威: 베이징시 관권국 부국장)

(4) 협회 비서처 비서장: 류둥위이(刘东威)

5. 베이징시 판권국 상설(常设)기구

1) 전문위원회

(1) 소프트웨어 업무위원회

베이징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출판물 설계, 개발, 판매, 출판, 중계서비스 등 업체들과 협력으로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며 베이징시의 관련 행정, 사법부문과 협조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전자출판물산업을 위하여 지원 및 추진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주임 : 인쯔허(殷志鹤)
- ② 웹 사이트 : <http://www.bsia.org>

(2) 불법복제관 단속 위원회

베이징 저작권보호협회 상설 2급 사회단체조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베이징 지역의 도서·음반·전자·소프트웨어·영화 등 저작권산업기구에서 자원으로 결성한 저작권, 공안, 공상, 문화, 신문출판, 해관 등 행정관리부문이 참여한 사회단체이다. 2002년 4월 현재 단체 회원기구 51개, 개인 회원 1명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업무: 베이징 지역의 불법복제행위 단속을 위한 홍보 및 자문 업무를 진행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위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관련 행정관리부문을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보상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며 타 지역의 불법복제 단속기구에 협조를 제공한다.

- ① 기구 : 사무실, 신고부서, 조사부서
- ② 주임 : 류즈웨이(刘志伟)

(3) 법률사업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베이징시 저작권보호협회의 상설 저작권법률 구제기구로 2002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베이징 지역의 저작권 법률에 정통한 유명 법률사무소, 대학교, 연구기구 등 단체 회원과 법관, 중재인원, 교학연구인원 및 관련 정부부문 관리인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요업무 : 베이징시의 저작권 입법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논증을 진행하고 획책, 조례 대행을 제공하며 사회 역량을 동원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음악저작권의 사용료 수금업무를 대행하며 법률자문 업무를 전개한다.

- ① 기구 : 법집행위원회, 비서처, 연락부서, 연구부서, 교육부서, 서비스부서 등
- ② 주임위원 : 장츰권(张赤军)

2) 전문서비스기구

(1) 베이징 국제 저작권무역센터

베이징 국제 저작권무역센터는 2002년 6월에 설립되었다. 중국내외 저작권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주식합작제 경영체제이다.

중국 내외 저작권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중국 내외 저작권 소유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며 저작권 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보호하고 저작권대리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 다양한 기획안을 제공하고 저작권 거래를 조직하며 저작권 및 문화전시



회를 전담한다.

- ① 기구 해외사업부, 국내사업부, 전시홍보부서
- ② 총경리 : 가오페이(高飞)
- ③ 연락처

-주소 : 北京市朝阳区建国路88号 SOHO 现代城
 -우편번호 : 100022
 -전화 : 010-85802374, 85802400
 -팩스 : 010-85802475

(2) 베이징 저작권대리유한책임회사

베이징 저작권대리유한책임회사는 1998년에 설립된 베이징시 저작권보호협회 소속 전문 서비스 기구이며 베이징시 저작권보호협회, 베이징 TV사업개발그룹, 베이징 방송발전총회사, 베이징 커윈귀뢰(科文国略)정보기술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중국 최초의 주식제 대리회사이다.

중국 내외 도서, 음악, 방송, TV프로그램, 영화, 음반, 멀티미디어 및 사회 각 계층 저작권 소유자들의 작품 저작권 대리업무를 제공하고 중국 내외 출판업무 동향 연구, 중국 내외 저작권 정보 발부 및 저작권 시장분석을 제공하며 베이징 지역 저작권 소유자의 기존 작품의 디지털화 사용권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① 기구 국내사업부, 국제사업1부, 국제사업2부
- ② 총경리 수쯔쥘(苏志军)
- ③ 연락처

-주소 : 北京市东城区塔园外交公寓5号楼 1单元6层2号
 -우편번호 : 100600
 -전화 : 010-85322136~39
 -팩스 : 010-85322135

(3)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베이징 수석대표

2002년에 설립된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베이징 수석대표는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의 위탁과 베이징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 감독 하에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저작권 집단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을 대표로 그들의 음악작품에 대한 베이징 지역 공연허가사용권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사용비용 수금업무도 대행한다.

중국 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중국 내외 음악 저작권 소유자를 대표하여 베이징 지역에서 그들의 작품을 사용하여 현장 및 기계 공연을 진행하는 기구와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기구들에게 공연권한 및 사용 허가증을 발부하는 동시에 음악작품 공연권 허가사용료 수금업무를 대행하고 수납한 비용은 중국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하여 중국 내외 작가들에게 결재된다.

- ① 기구 : 허가부서, 비용징수 부서
- ② 수석대표 : 수쯔쥘(苏志军)
- ③ 연락처

-주소 : 北京市东城区塔园外交公寓5号楼 1单元6层2号
 -우편번호 : 100600

-전화 : 010-85322138

-팩스 : 010-85322135

(4) 베이징 타이허홍예(太和宏业) 저작권사업 컨설팅 유한책임회사

2002년 4월, 사회 및 중국 내외 저작권 소지인, 작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립한 저작권 전문 서비스기구이며, 주로 저작권 대리,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무역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었다.

저작권 컨설팅 및 홍보 업무에 종사하며 저작권 고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무역 및 법률문서 등이 언급된 번역서비스 제공, 저작권 침범 검증서비스 전개, 저작 쟁의 조정, 저작권 거래 자문 제공,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창작 및 저작권 교류를 조직하여 작품 창작자와 사용자들을 위하여 양방향 서비스 제공, 창작 신진 배양 및 작품 추천·포장, 중대한 프로젝트 투자 기획 및 시장전이 담당 등 업무를 진행한다.

① 기구 : 저작권 컨설팅부서, 저작권 거래부서 등

② 부 총경리 : 귀비오우(郭彪), 류우리(刘力)

③ 연락처

- 주소 : 北京市沙滩北街2号中研楼

- 우편번호 : 100009

- 전화 : 010-64023140

- 팩스 : 010-64027214

3.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中华人民共和国信息产业部)

1. 신식산업부 주요 직능

1) 국가 정보산업 발전전략, 방침, 정책 및 전반 계획을 연구·제정하고 전자정보제품 제조업, 통신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며 국민 경제와 사회 서비스 정보화를 추진한다.

2) 전자 정보제품 제조업, 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규정을 발표하며 행정집법 및 집행감독을 담당한다.

3) 국가 공중 통신망(현지와 장거리 전신망 포함), 방송 TV망(무선 및 유선 TV망 포함), 군공부문 및 기타 부문 전용 통신망에 대한 통일 계획을 제정하며 산업관리를 진행한다.

4) 전자 정보제품 제조업, 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술정책 및 기술기제,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방송 TV전송망 기술기제 및 표준을 제정하며 통신망 장비 네트워크 가입 인증 및 전신 단말장비 네트워크 가입 관리를 담당하며 전자 정보제품 품질 감독 및 관리를 지도한다.

5) 전국의 무선 전신 주파수, 위성궤도 위치, 통신망 코드 및 도메인 네임, 주소 등 공중 통신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를 담당하며 무선 전신 방송국의 설치에 대한 심사비준, 무선 전신 테스트 및 감독을 담당하며 법적으로 무선 전신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무선 전신 교란 사건을 조정하며 공중 전자파 질서를 수호한다.

6) 법적으로 전신 및 정보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영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보증하며 국가 및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통신망 사이 상호링크 방법 및 결산표준을 제정하며 집행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7) 통신 및 정보서비스 비용납부 정책을 제정하며 기반 우편, 전신업무 비용납부 표준을 확정하고 집행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8) 공산당 정부 전용 통신망 구축 계획, 구축, 관리를 담당하며 국가 통신망 감독제어 조절센터 및 국제 통신망 수출입국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며 공산당 정부 전용 통신, 국제 응급 통신 및 기타 주요 통신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며 국가 통신 및 정보 보안을 보장한다.

9) 산업정책과 기술발전 정책에 근거하여 정보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산업구조, 제품구조 및 기업구조 조정을 지도하고, 국유기업 재조합 및 기업 그룹 구축을 지도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중복 건설을 방지한다.

10) 전자 정보제품 제조업, 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의 과학 연구·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연구 및 수입 기술의 이해·수용·창조를 조직하여 과학 연구 성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민족공업을 지원한다.

11) 군공전자에 대하여 산업관리를 실시하며 군공전자 발전 전략, 방침정책 및 기획을 연구·제출하며 군대 및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획과 연결하여 실시한다.

12) 국민경제 정보화 발전계획을 연구·제정하고 업체를 협조하여 국가 중점 정보화 공정을 추진하며 정보자원 개발·이용을 지도, 조정 및 실시한다. 전자 정보기술 확장응용 및 정보화 보급교육을 지도한다.

13) 주요 우정 및 전신기업의 재무 총결, 자금 조달 및 청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우정과 전신기업의 경영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우정 및 전신 서비스에 대한 보조를 실행하며 관리 권한에 근거하여 기관 및 직속기구 대표자를 관리한다.

14) 국가를 대표하여 관련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정부사이 협정을 체결하며 대외경제기술 합작 및 교류를 진행하여 정부간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1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의 통신 및 정보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16) 산업 통계 및 산업 정보 발행을 담당한다.

17) 국무원에서 일임한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우정국을 관리한다.

2. 신식산업부 관계자

- 1) 부장 : 우지환(吴基传)
- 2) 부부장 : 러우친젠(娄勤俭), 장춘장(张春江), 거우중원(苟仲文)
- 3) 국가 우정국 국장 : 류우리칭(刘立清)
- 4) 신식산업부 주재 규률검사조 조장 : 리쇠잉(李雪莹)
- 5)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 주소 : 중국 베이징 시창안제(西长安街)13호
 - 우편번호 : 100804
 - Email:webmaster@mii.gov.cn

3. 신식산업부 기구

1) 관공청(办公厅)

신식산업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각 부서의 업무관계를 조정하며 신식산업부의 주요 회의의 전달한다. 정보, 뉴스발표, 대외 선전, 공공관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신식산업부 지도자들의 비서사무를 담당한다. 신식산업부 기관문서, 기록자료, 기밀, 보위, 서신 방문, 기관재무, 국가자산 및 기타 행정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주임 : 청광휘이(程光辉)

-부주임 : 양위화(杨裕华), 저우보우웬(周宝源), 첸진첸(钱晋群)

2)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종합적인 정책 및 중요한 개혁방안을 연구·제정하고 정보산업 법률, 법규 및 행정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행정 집행 감독 및 행정 재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 대외 개방정책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 통신 및 정보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과 관계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사장 : 장요우핑(蒋耀平)

-부사장 : 조우메이창(赵梅庄), 귀푸화(郭福华)

3) 종합기획사(综合规划司)

전자 제품 제조업, 통신업,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수립하고 기반 통신망, 컴퓨터정보망, 방송TV망 및 다양한 전용 통신망의 구축을 조정하며 공중망과 전용망,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호협력 발전을 촉진하며 자원배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중복구축을 방지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내 건설기금을 관리하고 기술유치, 외자유치, 대외합자, 합작업무를 지도하며 통신 및 정보망의 구축표준, 설계규범을 편성하고 통신 및 정보망 구축시장에 대하여 거시적 관리를 실시하며 산업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산업 정보를 발표한다.

-사장 : 왕젠장(王建章)

-부사장 : 류우루우린(刘汝林), 첸팅수어(钱庭硕), 장춘린(张春林)

4) 과학기술사(科学技术司)

국제 정보기술 발전추이를 연구하고 과학기술발전 계획 및 기술정책을 수립한다. 공중 통신망기술 체제표준 및 네트워크 코드 매김 계획을 수립하며 방송 TV망 기술체제 및 표준을 제정한다. 중요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공략을 조정하여 과학연구 성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전자정보제품 품질 감독을 담당하며 전자정보 기술표준, 계량 및 정보업무를 관리한다.

-사장 : 윈쿠(闻库)

-부사장 : 장신성(张新生), 한권(韩俊)

5) 경제체제 개혁 및 경제 운영사(经济体制改革与经济运行司)

기업 개혁방안을 연구·제정하여 기업 개혁, 구조재편, 개조 및 기업관리를 지도하며 기업 개혁 상의 중요 문제를 조정한다. 대기업 및 기업그룹 발전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국유 기업을 지도하여 전략적 구조재편을 실시한다. 경제 운영 상황에 대한 통계, 테스트, 분석을 한다. 주요 연간 발전 지표를 예측하고 전자정보제품 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진행하며 전자정보 기술제품 수입관리를 조정한다.

- 사장 : 저우즈쇠(周子学)
- 부사장 : 왕빙커(王秉科)

6) 전신관리국(电信管理局)

전신발전계획, 정책 및 조치를 연구·수립하고 법에 따라 전신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공정경쟁을 수호하고 보편성 서비스를 보장하며 국가 및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통신 및 정보서비스 운영허가증 심사비준 및 발부를 담당한다. 서비스 품질 감독 및 가격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통신망간 상호링크 및 결제방법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통신망 코드 자원의 배분 및 관리를 담당하고 도메인 네임, 주소 및 국제 조정을 관리한다. 통신망 장비 상호링크 표준 인증 및 전신 단말장비 네트워크 가입 관리를 담당한다. 공산당 정부 전용 통신망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통신망 테스트 제어센터, 국가 통신 수출입국 및 인터넷보안 테스트 센터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복구 응급 통신 및 기타 주요 통신을 지휘하고 조정하며 국가 통신망 및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출한다.

- 국장 : 수진성(苏金生)
- 부국장 : 왕슈우권(王秀军), 장수(张枢), 한샤(韩夏), 루양(鲁阳)

7) 경제조정 및 통신 결산사(经济调节与通信清算司)

국가 국유자산 관리정책법규 및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통신재무규장을 제정하며 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우정, 전신기업의 재무 담당, 자금조달, 기업사이 결산에 대한 제도를 연구·제정하고 우정 및 전신기업사이 경제적 관계를 조정하며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서비스 보조와 우정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통신 및 정보서비스비용 정책, 우정관련 기반 및 전신기업의 비용 수납 표준을 제정하며 국가 예산 내 자금을 관리한다.

- 부사장 : 왕잔푸(王占甫)

8) 전자정보제품 관리사(电子信息产品管理司)

전자정보제품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 조치를 연구·제정하고 제품구조조정을 지도하며 주요 시스템 장비 및 마이크로전자 등 기반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조직하고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 부속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조정하며 산업 투자 방침을 편성하고 전자정보기술 확대 적용을 지도한다.

- 사장 : 장치(张琪)
- 부사장 : 덩원우(丁文武), 조우버(赵波)

9) 군공 전자국(특종전자장비국) (军工电子局)

군사 전자 과학 기술 공업의 산업관리를 담당한다.

- 국장 : 왕소우샹(王绍祥)
- 부국장 : 소우수린(邵术林), 황루이청(黄瑞成)

10) 정보화 추진사(국가정보화 판공실) (信息化推进司)

국민경제와 사회 정보화 발전 계획을 연구·제정하고 각 지역, 각 산업의 국민경제 정보화업무를 지도하며 업체를 협조하여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추진한다. 정보자원 발전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연구·제정하고 정보자

원의 개발·이용과 정보보안기술 개발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정보화 보급교육을 추진한다.

- 사장 : 리진쿠이(李金奎)
- 부사장 : 장휘이성(張會生)

11) 무선 전신관리국(국가 무선 전신 관공실) (无线电管理局)

무선 전신 주파수계획을 제정하여 주파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며 무선 전신 주파수 자원의 지배와 관리를 담당한다. 무선 전신 방송국 관리 및 무선 전신 감독 테스트를 담당하며 전자기 교란 사건을 처리하고 공중 전자파 질서를 수호한다. 법에 따라 무선 전신 관리제를 실시하며 위성궤도 위치조정을 담당한다. 관련 국제 무선 전신 회의에 참석하며 무선 전신 관리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 국장 : 류우리화(劉利華)
- 부국장 : 류우옌(劉岩), 셰푸이버(謝飛波)

12) 의사사(外事司)

정보산업관련 국제조직 가입을 담당하고 정부간 협의 체결 및 득실을 조정하며 정부간 관련 통신 및 정보사무를 처리한다. 정보산업 대외경제 기술합작정책을 연구하고 대외합작 및 교류에 대한 부분별 관리를 진행한다. 분업권한에 따라 출국 프로젝트, 단체모집 및 인원예 대한 심사비준과 관리를 담당한다.

- 사장 : 장쥰(張軒)
- 부사장 : 취윈추(瞿文初), 천인(陳因)

13) 인사사(人事司)

관리권한에 따라 인사업무를 관리하며 정보산업 시스템 전문인력 예측, 계획, 배양, 지력 유치, 인재교류 및 전문기술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및 직속기구의 기구편성과 노무급여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 교육 및 노무급여 업무를 지도한다.

- 사장 : 류우양성(劉陽生)
- 부사장 : 조우귀이팡(焦桂芳), 왕요우광(王耀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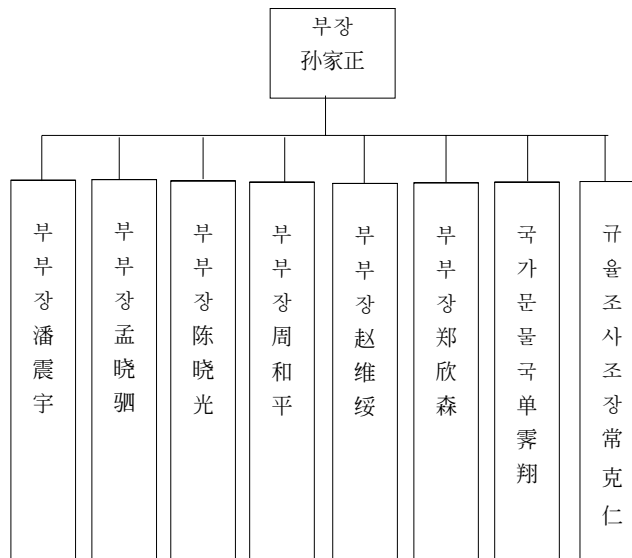
4.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1. 주요 직능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는 국무원 구성위원회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직능을 행사한다.

- 1) 문화예술사업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연구 책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 2) 문화사업 발전전략 및 발전기획을 연구 제정하고 문화체제개혁을 지도한다.
- 3) 문학 및 예술사업을 관리하고 예술창작 활동을 지도하며 대표성, 시범성, 실험성이 강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각종 예술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의 중요한 문화활동을 통일·관리한다.
- 4) 문화산업 기획 및 정책을 제정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지도·조절하고 국가 중점 문화설비 구축을 기획·지도한다.
- 5) 문화시장을 통일관리하고 문화시장의 발전기획을 책정한다. 그리고 문화시장의 발전 동향을 연구하고 문화시장 검사작업을 지도한다.
- 6) 사회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문화사업 발전기획 제정 및 시행 업무를 진행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사업의 구축 및 발전을 지도한다.
- 7) 도서관사업을 관리하고 도서관문헌자원의 구축, 개발 및 사용을 지도하며 도서관의 표준화 및 현대화구축을 추진한다.
- 8) 대외문화사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문화교류업무를 통일·관리하고 관련 정책 법규를 제정한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문화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연도행사계획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을 책정, 외국주재 대사관 문화기구 및 홍콩, 마카오 문화기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 9)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박물관을 관리한다.
- 10) 국무원이 하달한 기타 업무를 전담한다.

2. 문화부 조직도





3. 기구

판공청, 정책법규부, 예술부, 기획재무부, 인사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시장부, 문화산업부, 사회문화 도서관부, 대외문화 연락국, 직속기관당위, 기관복무국, 퇴직간부국.

1) 판공청

문화부 지도층 관계자들과 협조하여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감독·검사, 기관 내부의 법규 제도 및 연도 사업계획을 제정, 기관정부간의 원활한 교류를 보장하고 기관행정사무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주임 : 리징허(李景和)
- ②부주임 : 황진춘(黄振春), 장젠강(张健康)

<표 I -1> 판공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팩스 |
|-------------|-------------------------|--------------------------------|----------|
| 부장사무실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4曾 | 65551432 | 65551433 |
| 비서 1실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4曾 | 65551434/65551468 | 65551428 |
| 비서 2실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2曾 | 65551186/65551118 | 65551180 |
| 기밀 문서관리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4曾 | 65551184/65551426/ 65551420 | 65552060 |
| 종합처(보안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3曾 | 65551307/65551308 | 65551309 |
| 재무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5曾 | 65551501/65551502/ 65551503 | 65551505 |
| 비서3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5曾 | 65551496/65551497/ 65551498 | 65551529 |

2) 정책법규국

문화사업 발전전략과 중·장기발전 기획 및 연도 집행계획 연구·제정, 문화예술사업정책 연구·제정, 문화입법규범 편성 및 실시, 종합적인 문화법률 및 법규 초안 제정, 문화부의 중요문서 및 보고를 초안한다.

- ①국장 : 고우수원(高树勋)
- ②부국장 : 레이시닝(雷喜宁), 홍융평(洪永平)

<표 I -2> 정책법규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팩스 |
|-----|--------------------------|-------------------|
| 연구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街 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1866/65551866 |
| 법규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街 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1861 |



3) 예술국

문학 및 예술사업을 관리하고 예술사업 발전계획을 편성, 문예사업 발전구조 및 배치를 지도, 개혁사업을 연구·지도, 전국적으로 예술대회·전람회의 의무적인 공연 등 중요한 예술 활동을 조정, 문화부 직속 예술기구의 업무를 지도한다.

- ①국장 : 펑웬(冯远)
- ②부국장 : 위핑(于平)
- ③감찰원 : 다이잉루(戴英禄)

<표 I -3> 예술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팩스 |
|--------|-------------------------|--------------------------------|----------|
| 사무실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52/65551753 | 65551332 |
| 연극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66/65551777/ 65551772 | 65551773 |
| 음악 무도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42/65551745 | 65551743 |
| 곡예 잡기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60 | 65551761 |
| 문학 미술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64 | 65551765 |
| 공연 연락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56 | 65551757 |

4) 계획재무국

문화경제정책을 연구·제정, 직속 문화기구 재무사업을 감독, 문화·교육·과학연구·외사 등 문화기구의 예산을 관리, 문화시설 표준을 제정하고 국가 중점 문화시설 구축을 계획·지도, 기구 및 소속기구의 인프라구축, 부동산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국장 : 리슝(李雄)
- ②부국장 : 리쇼우라이(李小磊)

5) 인사국

문화예술인력발전계획을 연구·제정하고 실시, 문화계 인사노동 체제개혁을 추진, 기구 및 소속기구 인사사업을 담당하고 외국 주재 대(영)사관 문화부(센터)의 공무원 파견업무를 관리, 전국적으로 문화단체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①국장 : 뤼장중(吕章中)
- ②부국장 : 인푸(殷福), 천홍우(陈洪武)

6) 교육과기국

소속 대학/학교의 예술교육 및 문화과학기술 발전을 기획하고 연도(年度) 집행계획을 편성, 국가 중점 문화예술·과학연구 프로젝트 공략 및 주요 성과 보급을 조정, 문화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대학/학교의 예술교육제도 개혁 및 업무구축을 담당한다.

- ①국장 : 퉁밍캉(童明康)
- ②부국장 : 우카이잉(吴开英)



<표 I -4> 교육과기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팩스 |
|-------|-------------------------|-------------------|----------|
| 종합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677/65551692 | 65551676 |
| 교육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682/65551687 | 65551709 |
| 교학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673/65551852 | 65551675 |
| 과학연구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699/65551679 | 65551678 |

7)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의 발전기획 및 관련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문화산업의 발전 및 구축을 지원, 문화산업 운영 중 발생하는 주요문제를 조정한다.

- ①국장 : 왕용장(王永章)
- ②부국장 : 진이위이(金一伟), 세루이(谢锐)

<표 I -5> 문화산업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
| 연구기획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0曾 | 65551405/65551406 |
| 종합유도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0曾 | 65551784/65551406 |

8) 문화시장국

문화시장에 상품유형으로 유통분야에 진입한 문화제품 및 문화오락경영활동 등에 대한 관리정책 법규를 제정하고 감독을 실시, 문예연출시장 및 문화오락시장을 관리하고, 음반제품시장의 도매·판매·임대·방송을 관리한다. 음반 제품의 수입관리를 담당하고 문화시장의 발전추세 연구 및 문화시장을 감찰, 영화발행 및 방송사업을 지도한다.

- ①국장 : 류우위주(刘玉珠)
- ②부국장 : 장 신 켄(张新健)
- ③감찰원 : 류우성리(刘胜利)

<표 I -6> 문화시장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팩스 |
|------------|--------------------------|---|----------|
| 종합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1880/65551881 65552132/65551010 | 65552133 |
| 검찰 지도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5曾 | 65552132/65552133 65551892/65551879/ 65551010 | |
| 오락 공연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1882/65551885 65551883/65551884 | 65551885 |
| 음반, 영화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1898/65551897 /65551896 | 65551899 |
| 인터넷 문화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1曾 | 65552100/65552101 | |



9) 사회문화도서관국

사회문화사업을 관리하고 대중문화·소수민족문화·소년아동문화 및 각 종 도서관 등 사회문화사업의 발전계획을 연구·제정하고 실시한다. 문화예술 보급을 지도하고 도서관헌자원을 구축·개발 및 응용 지도, 도서관간의 합작 및 도서관의 표준화와 현대화를 구축한다. 도서관헌 고적보호사업을 지도하고 전국의 주요 사회문화활동을 관리한다.

- ①국장 : 장쭈(张旭)
- ②부국장 : 저우쇼우푸(周小璞), 린용권(蔭永钧), 루요우루(陆耀儒)

<표 I -7> 사회문화도서관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지점 | 전화 | 팩스 |
|------------------|--------------------------|--------------------------------|----------|
| 사무실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9曾 | 65551736/65551737 | 65551776 |
| 대중문화처 (아동문화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0曾 | 65551734/65551777/ 65551735 | |
| 도서관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0曾 | 65551738/65551746 | |
| 소수민족 문화처 | 北京市东城区朝阳门大街10号文化部办公楼 10曾 | 65551740/65551747/ 65551741 | |

10) 대외문화연락국

(1) 홍콩, 마카오, 대만문화사무국

대외문화사업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통일 및 관리한다.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문화교류정책, 법규를 제정하고 비자, 중외문화합작 협정, 연도 집행계획, 문화교류 프로젝트계획을 관리한다. 대외 대사관문화처의 업무사업 및 홍콩, 마카오 주재 문화기구의 사업을 유도하고 외국주재 대(영)사관 문화처(센터) 및 홍콩, 마카오 문화기구 업무를 지도한다. 인사국의 인사조정을 협조하고 외국 주재 간부를 관리한다.

- ①국장 : 덩웨이(丁伟)
- ②부국장 : 푸통(蒲通), 순자무(孙加木), 리신(李新)
- ③감찰원 : 텐단(田丹)
- ④국장조수 : 세진잉(谢金英), 순쇼오홍(孙晓红)

(2)소속 기구

중국예술연구소, 연극연구소, 미술연구소, 음악연구소, 영화예술연구소, 무도연구소, 중국화(画)연구소, 중국문물연구소, 중외문화교류센터, 중국예술과기연구소, 중국경극원, 중국교향악단, 중국청년예술극장, 중국 서커스극장, 중앙실험화극장, 중국아동예술극장, 중국동방가무단, 중국가무단, 중앙민족악단, 중앙발레무극장, 중앙음악학원, 중국음악학원, 중앙연극학원, 중국곡예학원, 중앙미술학원, 중국미술학원, 베이징무도학원, 상하이음악학원, 상하이연극학원, 중앙문화관리간부학원, 중국북방예곡학원, 중앙서커스학원, 중국혁명박물관, 고궁박물관, 로신(鲁迅)박물관, 중국미술관, 공왕부(恭王府)관리처, 매란방(梅兰芳)고거기념관, 중국문물신문사, 문화예술출판사, 문화부 문화예술인력센터, 문화시설구축관리센터, 중국연출관리센터, 중국대외연출회사, 중국대외예술전람센터, 중국문물교류센터, 중국문물유통협조센터, 문화부 은퇴인원 서비스센터, 중국문화국제여행사, 중국문화예술총부, 중국상위(祥宇)문화발

전센터, 화한(华瀚)국제문화발전회사, 화원(华文)중국민간문화예술발전회사, 화원(华文)도서
관발전회사.

<표 I -8> 대외문화연락국 조직기구

| 기구 | 사무실 번호 | 전화 | 팩스 |
|-----------|--------|---------------------|-------------------|
| 사무실 | 1234 | 65551952/65551965 | 65551958/65551959 |
| 당무 | 1312 | 65551964/65551965 | |
| 예빈처 | 1223 | 65551934/65551935 | |
| 미대처 | 1326 | 65552005/65552004 | |
| 아시아 아프리카처 | 1323 | 65551408/65551995 | |
| 아프리카처 | 1332 | 65552012/65552013 | |
| 아시아처 | 1302 | | |
| 유럽아시아처 | 1309 | 65552018/65551980 | |
| 서 유럽처 | 1306 | 65551966/65551967 | |
| 종합연구처 | 0330 | 65552010/65552011 | |
| 대외문화전송처 | 1203 | 65551914//1915/2161 | |
| 국제처 | 1206 | 65551906/65551907 | |
| 비자처 | 1204 | 65551908/65551909 | |
| 홍콩, 마카오처 | 1211 | 65551920/65551922 | |
| 대만처 | 1222 | 65551418//1933/1932 | |

5.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식산업국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국무원 소속의 특허사업 및 외국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다.

1. 기구 및 직능

1) 관공실

- (1) 국가 지적재산권국 계열의 정부사업을 조직·협력하고 관련 정책문제들을 연구·해결 한다.
- (2)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조정해야 할 특허 및 지적재산권 사업을 담당한다.
- (3) 국가 지적재산권국 관계자의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감독검사에 협조한다.
- (4)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주요 문건·보고서 초안 작성 및 국가 지적 재산권국 규칙 제도의 제정업무를 담당한다.
- (5)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공문관리·기밀문서·서신·기록서류관리 및 회의 등 일반비서 업무를 담당한다.
- (6)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사업 홍보 및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법률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7) 국가 지적재산권국 내 정부정보를 발표, 교류 및 기타 관련 정보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8) 국가 지적재산권국 계열 행정관리의 기획 및 국 기관 행정사무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9) 국가 지적재산권국 소속기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10) 직속 기관의 일상사업을 전담한다.
- (11)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2) 인사사

- (1) 국가 인사·노동보수에 관한 국가 정책의 실시방안을 연구 제안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를 협조하여 해결한다.
- (2) 국가 지적재산권국 계열의 인사·노동보수 사업의 규칙 및 기획을 제정한다.
- (3) 국가 지적재산권국 기구 및 국 소속 사업기구의 조직설치 및 인원을 편성·관리한다.
- (4)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인원 및 지도층 관계자의 관리권한 내 인원에 대한 인사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5) 인력유치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인력유치 지도소조 관공실의 사업을 지도한다.
- (6) 국가 지적재산권국 기관 내 및 전국의 특허 계열의 교육사업 연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책임지고 관리·조정 한다.
- (7) 국가 지적재산권국 소속 사업기구, 사회단체에서 조직한 인사사업을 관리한다.
- (8) 국가 지적재산권국 소속 사업기구의 전문기술 업무 선정사업 관련 정책 및 방법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 (9) 전국 특허 관련 업무 선진단체 및 선진사업자를 선정한다.
- (10)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외국 주재인원 인사 관리 및 국 계통 내부 출국인원의 정치심사 사업을 담당한다.
- (11) 인력자원 사무실 사업에 참여한다.
- (12) 국가 지적재산권국 지도층 관계자가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3) 법규사

- (1) 특허법 및 세칙의 수정업무를 담당한다.
- (2)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초안 작성한다.
- (3) 특허법과 세칙 관련 법규·규정의 해석업무를 담당한다.
- (4)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 및 수정 방안을 제안한다.
- (5) 지적재산권 대외협상 방안을 제안한다.
- (6) 지적재산권 법률·법규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조정한다.
- (7) 특허 확정 및 권리침범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 기구를 지정한다.
- (8) 특허심사가이드 및 특허업무 관련 규정제도 제정업무를 담당한다.
- (9) 특허대리기구를 심사하고 섭외 특허대리기구를 지정한다.
- (10) 특허대리인의 수능 및 자격인증사업을 책임진다.
- (11) 행정재심사규정 및 표정 제정을 담당한다.
- (12) 지적재산권국이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4) 국제합작사

- (1) 지적재산권의 섭외 총괄 및 협력사업을 담당한다.
- (2) 양국 혹은 다국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공약 및 협정협상, 계약체결 및 수정사업을 담당한다.
- (3) 세계 지적재산권조직 및 기타 국제(외국) 지적재산권조직과의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 (4) 특허사업의 국제합작 및 교류를 담당한다.
- (5)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합작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6) 홍콩·마카오·대만의 지적재산권 사무를 담당한다.
- (7) 지적재산권국의 인력유치사업에 참여한다.
- (8) 지적재산권국이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5) 협조관리사

- (1) 국가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관리사업 정책·방법·조치 및 규정제도를 연구·초안한다.
- (2) 지방 특허관리기구의 특허분쟁 처리 및 특허 사칭행위 조사 사업을 담당한다.
- (3) 특허시장 규범화 및 특허기술 시행 추진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제정한다.
- (4) 양국 및 다국간의 지적재산권 협의, 협정 집행 중 중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행정법 집행 및 관리사업을 조정한다.
- (5) 특허 자산평가사업 및 특허 자산평가 서비스기구를 규범화하고 관리한다.
- (6) 강제적 허가 및 그 비용 책정요구에 대해 건의한다.
- (7) 특허계약 등록사업을 담당한다.

- (8) 중국 특허금상 및 인사사와 공동으로 전국 특허계통 선진단체, 선진사업자를 선정한다.
- (9) 특허전략 연구사업을 전개한다.
- (10) 지적재산권국이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6) 기획발전사

- (1) 국가 기획발전 및 재무관리 정책 실시방안을 연구·제출하고 정책성 문제를 해결한다.
- (2) 지적재산권국 및 전국의 특허사업의 연도 계획, 장기발전계획, 인프라구축계획을 편성한다.
- (3) 지적재산권국의 자동화사업 기획을 편성하고 전국 특허 시스템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4) 지적재산권국 연도 재무계획·예산·결산 편성 및 허가업무를 담당한다.
- (5) 지적재산권국의 국유자산을 관리한다.
- (6) 지적재산권국의 특허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 (7) 지적재산권국 기구의 행정·재무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8) 지적재산권국의 업무발전과 경비배치의 종합균형 및 조절사업을 책임진다.
- (9) 소속기구의 재무사업을 주도하고 감독한다.
- (10) 지적재산권국 지도층 관계자의 소속 사업기구에 대한 정책주도, 국유자산 감독 등 거시적인 관리에 협력한다.
- (11) 지적재산권국이 하달한 기타 사업을 완성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식산업국 전리국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내설기구(1999년 10월 17일)

1. 관공실

- 1)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관련 일반사무 업무, 서신, 서류,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다.
- 2)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을 제정한다.
- 3) 재무, 국가자산, 행정사무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4)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위탁을 받고 국가 지적재산권국 계통의 부동산 및 인프라구축을 관리한다.
- 5) 행정재심사 및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 6)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관련 대외접대를 책임진다.
- 7)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하달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2. 인사교육부

- 1)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관련 인사, 노동보수, 교육, 보안, 기밀, 방화 등 분야의 규정제도 및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 2)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관련 인사 교육사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 3)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기관 및 소속기구의 기구설치 및 인원편성을 관리한다.
- 4)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기관 및 소속기구 전문기술인의 업무를 편성하고 특허대리, 업무명칭, 대리 평가를 담당한다.
- 5)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간부의 관리 권한 내에 직원을 고용·임면·배치(교류), 고찰 및 상벌 등 업무를 담당, 간부 퇴직과 인사 기록부를 관리한다.
- 6) 국가 지적재산권 특허국 기관 및 소속기구 직원의 급여, 복지 등을 관리한다.
- 7) 국가 지적재산권 특허국 기관 및 소속기구 직원의 교육·훈련·출국연수를 관리한다.
- 8)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위탁을 받고 국가 지적재산권국 계통의 보안, 비밀, 방화 업무를 담당한다.
- 9)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인력유치 및 국가 특허계통의 교육사업에 참여한다.
- 10)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인력자원사무실의 일상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11)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하달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3. 업무심사 관리부

- 1) 특허심사업의 중 장기발전계획 및 주요 정책연구·입안, 심사업무·연도계획을 세운다.
- 2) 각 부서의 심사업업 혹은 사무처리업무 규정량 표준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심사 장려

정책을 제정한다.

- 3) 심사안내와 판사규정의 수정의견을 제기하고 심사업무지도위원회의 사업회의를 조직한다. 심사안내공보 혹은 심사업업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 4) 심사업업의 품질관리방법 및 표준을 제정하고 조절한다.
- 5) 특허심사비준 과정에서 각 업무부서간 및 섭외 대리기구사이의 사업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 6)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계통의 심사용 도표 및 심사용 표준어를 조정하고 통일시키며 심사용 표준어 컴퓨터 보좌심사시스템의 구축에 참여한다.
- 7) 심사업무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심사업무 통신을 편집·출판한다.
- 8) 신입 심사위원의 교육과 심사위원의 심사업무지식 교육을 담당한다.
- 9) 심사부의 심사과정 중 신청문서의 인수, 관리 및 상응한 데이터 수집, 기간 설정 및 감독,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10)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이 하달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4. 1부(一部)

- 1) 특허신청 접수업무를 담당한다.
- 2) 특허신청의 중간서류 및 각종 청구서류 접수업무를 담당한다.
- 3) 발명특허 신청의 기초심사를 담당한다.
- 4) 특허서류 관리를 담당한다.
- 5) 특허증명서 발부를 담당한다.
- 6) 특허공보 및 특허설명서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 7) 특허비용 수납 및 관리한다.
- 8) 발명 및 실용신형 특허신청의 분류 및 연구사업을 조직한다.

5. 기기발명 심사부

동력, 금속가공, 목재가공, 무기, 식량 및 식품가공, 방직, 종이제조 및 인쇄, 포장, 수송 및 운반, 농업, 임업, 광산업, 교통운수 등 기기분야의 발명특허신청에 관련된 실질적 심사, 재심사 전 실질심사, 재심사 준비 심사, 특허권 취소청구심사, PCT 국제검색 및 국제 초보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6. 전기학발명 심사부

기본 전자부품, 전동기, 전기발급, 기본 전자선로, 전자계산기, 통신, TV, 방송 등 기술분야의 발명특허 신청 관련 실질심사, 재심사 전 준비심사, 특허권 취소청구 심사, PCT 국제검색 및 국제 기초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화학발명 심사1부

식품 프로젝트, 약품, 생물 프로젝트, 화학 프로젝트, 석유화학 및 야금 등 기술 분야의 발명특허신청 관련 실질심사, 재심사 전 준비심사, 특허권 취소청구 심사, PCT국제검색 및 국제 기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한다.

8. 화학발명 심사2부

무기화학, 유기화학, 약물화학, 농업화학, 고분자화학 및 고분자응용 등 기술 분야의 발명특허신청 관련 실질심사, 재심사 전 준비심사, 특허권 취소청구 심사, PCT 국제검색 및 국제 기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한다.

9. 물리발명 심사부

측량 및 계량 기술과 장치, 광학 부품과 의기, 성학부품과 의기, 자동제어와 조절, 신호장치, 정밀의기, 의료의기 및 설비, 생활용품, 건축토목 프로젝트, 열에너지프로젝트 등 기술 분야의 발명특허 신청 관련 실질심사, 재심사 전 준비심사, 특허권 취소청구 심사, PCT 국제검색 및 국제 기초심사 등 업무를 담당한다.

10. 실용신형 심사부

실용신형 특허신청의 기초심사, 실용신형 특허신청에 관련된 서류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1. 외형디자인 심사부

외형디자인 특허신청의 분류와 기초심사, 특허권의 취소, 외형디자인 특허신청에 필요한 서류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2. 특허 재심사 위원회

- 1) 특허국에서 판결한 신청 거부 혹은 특허권 취소 또는 유지 등 결정에 이견이 있어 재심사요구를 제기했을 경우 재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2)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3) 발명안건 관련 소송에 대한 응소업무를 담당한다.
- 4) 특허확정 및 특허침범 기술판결의 연구사업에 참여한다.
- 5) 인민법원 및 특허관리기구의 위탁을 받고 특허확정 및 특허침범사건의 처리에 자문의

건을 제공한다.

13. 특허문헌부

- 1) 특허문헌의 수집과 국제교환을 담당한다.
- 2) 심사용 검색파일(특허문헌과 비 특허문헌)의 편성, 준비 및 관리를 담당한다.
- 3) 특허문헌관의 업무를 책임지고 사회에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전국의 특허문헌 네트워크 및 정보서비스의 업무지도 사업을 담당한다.
- 5) 특허문헌의 연구를 담당한다.

14. 자동화부

- 1) 특허국의 자동화 중·장기기획 및 연도계획 제정을 담당한다.
- 2) 특허국 정보시스템자원 및 자동화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3) 특허국 자동화 연도계획 및 장기기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 4) 전국의 특허정보 프로젝트 구축을 지도한다.
- 5)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에서 하달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15. 공산당위원회

- 1) 공산당의 사상, 정치, 작풍 건설 등 사업을 조직하고 실행한다.
- 2) 마르크스 레닌주의 기본원리, 사상정치교육활동 및 정신문명 건설 등 사업을 전개한다.
- 3) 공산당원 및 공산당 간부의 일상교육, 관리, 훈련, 공산당원 발전 등 사업을 책임진다.
- 4) 지도층 관계자들에 대한 고찰 및 민주 평의 사업을 책임진다.
- 5)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소속 각 부서의 특허집행 및 청렴정치 구축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 6) 규율감찰의 신고 및 상고를 접수한다.
- 7) 노동자·청년·부녀 등 군중들의 조직사업을 지도한다.
- 8)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계통의 통일전략사업을 책임진다.
- 9)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공산당 조직 및 직속 기관 공산당위원회가 하달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식산업국 직속단위기구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直属单位机构)

1. 지적재산권 출판사

1980년에 설립된 지적재산권 출판사(원명 : 특허문헌 출판사)는 중국 최초의 특허국 부서 중 하나로 원 국가 특허국에서 주관, 설립하였으며 특허 문헌 법정 출판기구로 국가신문출판서가 허가한 국가 급 출판사 및 전자출판 기구이다. 1998년 국무원 기구개편 후 국가 특허국을 국가 지적재산권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특허문헌출판사를 지적재산권 출판사로 개칭했다.

1985년 중국특허법 시행 이래 출판사는 줄곧 중국 특허공보와 특허설명서의 출판 발행사업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근 60만 건에 달하는 특허문헌을 출판했다. 1992년 최초의 중국 특허문헌 CD-ROM이 개발 된 후 중국의 특허문헌 출판은 전자시대에 진입했고, 현재 출판사는 CD-ROM, 국제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18개 국가 및 국내 각 지방에 특허문헌을 출판 발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출판사는 편집부, 전자출판부 및 중국문헌전자기술 개발센터 등 3개 주요 기관과 기능부서로 구성됐다.

출판사의 편집부는 매년 과학기술자, 간부, 학생, 기업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및 기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관련된 백여 종류의 도서·전자출판물을 발행한다.

전자출판부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채택하여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전파하며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9년 10월에 대외 공개된 CNIPR 중국 지적재산권 사이트에서는 풍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다.

중국문헌전자기술개발센터는 최고수준의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프로세스, 인쇄 업무를 담당한다.

지적재산권 출판사는 독자와 작가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특허, 지적재산권 및 과학기술 지식을 널리 전파하며 사회 각 계층 인사들과 협력하여 공동 발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2. 지적재산권 신문사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중국특허보》를 《중국지적재산권보》로 이름을 변경하고 출판을 시작했다. 《중국지적재산권보》는 지적재산권 사업방침, 정책 전달 및 지적재산권 법률·법규 보급의 “도구”로서 신기술 및 신제품 전파의 교량역할을 한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지적재산권보》의 영향이 날로 확대될 것이며 업체·과학연구원소·지적재산권 관리기구·대리기구·발명인 및 사회 각 계층과의 연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지적재산권보》는 전면 개편됐다.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속도도 향상되었고 시장경제와 대중생활에 더욱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관련 업체들에게 정책·법률·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창의를 위해 도움 주는 것을 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3. 특허기술개발회사

1986년에 설립된 특허기술개발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소속의 국가 공상국에 등록된 전민소유제 기업이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정보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중국내외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 및 업체들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특허 및 상업정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기술을 생산력 향상에 적용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산업화, 상업화를 실현하고 중국의 과학기술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진한다. 특허기술개발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중국내외 과학연구원 및 업체들에게 특허신청, 양도, 소송 등에 대한 컨설팅 및 대행업무를 서비스한다.
- 2) 경제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허기술 프로젝트를 선택, 개발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용자 해준다.
- 3) 각 종 유형의 국내외 특허전시 및 회의를 개최한다.
- 4) 각 종 특허기술 및 제품을 홍보한다.
- 5) 특허기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 무역업무를 담당한다.
- 6) 각 종 소프트웨어프로젝트를 전담한다.
- 7) 샤먼하이창(厦门海沧)대만업체 투자스테이션 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샤먼 특허기술단지”의 각 분야를 전담한다.

4. 지적재산권 교육센터

지적재산권 교육센터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중국정부가 최초로 창설한 국가 급 교육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소속이다.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센터는 전국 지적재산권분야에 근무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중국의 지식분야에 재직 중인 인력에 대한 제도화, 규범화된 교육을 통해 국가 고위 지적재산권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을 보급하기도 한다. 중국 지적재산권 교육센터는 교학·연구·실천을 교육 이념으로 삼아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 및 아시아지역의 지적재산권 교육기관으로 부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92년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원 중국 특허국 중국지적재산권 교육센터 구축사업이 시작됐다. 중국지적재산권 교육센터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 관련국의 지원과 국내 지적재산권계의 협력하에 다년간의 준비를 걸쳐 1996년 4월 1일 인민대회당에 설립되었다. 교육센터의 설립은 중앙과 국무원 고위층 및 사회 각 계층의 관심을 모았으며, 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런젠신(任建新), 원 국가 과학위원회 위원 송젠(宋健)이 명예주임으로, 원 중국특허국 국장 장민관(蒋民宽), 황쿤이(黄坤益) 등이 센터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 외 센터는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 부 총간사 커쇼우더(柯肖德) 등 국내외 11명의 저명한 지적재산권 전문가들

과 학자들을 명예교수로 초빙했고, 중문강좌와 함께 외국어 강좌도 개설했다. 센터는 또한 국내 최고의 전문학자들을 초빙하여 우수한 지적재산권 교육자료, 학술저작을 편집·출판하고 외국 지적재산권 우수저작물들을 번역·출판한다.

센터는 설립 후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 및 유형의 지적재산권 교육 반 120여 개를 조직하여, 참여인원이 만 명을 초과하였다. 교육대상은 주로 특허심사원, 특허대리인, 지적재산권 관리기관 사업인원, 업체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 담당자, 법관 등이며, 교육내용은 특허, 판권, 상표, 라이선스무역 및 신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문제 등의 분야이다.

센터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중국에서 개최하게 될 국제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적재산권 컨퍼런스와 교육반을 전담하게 되며 향후 외국 지적재산권 교육기관과의 협작을 폭넓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센터는 교육활동 외 교육자료 편집·출판, 지적재산권 도서관 구축 및 자동화실현도 추진하고 있다.

5. 특허정보센터

특허정보센터는 현재 국가지적재산권 소속기구로 핵심특허 데이터베이스 관리권, 사용권 및 종합서비스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또 국가 급 대형 특허정보서비스기구로 최신 특허정보자원, 정보수집 및 서비스 네트워크, 최첨단 정보프로세스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외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핵심기술력이 탄탄하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및 전문기술자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임직원 100여 명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80%를 차지한다.

1) 담당 업무 및 범위

- (1)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자동화시스템 구축
- (2)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 정보의 가공, 전파, 검색, 컨설팅서비스 제공
- (3) 특허기술관련 전람, 중계, 개발, 실시 및 활용 하여 특허제품의 시범생산 및 무역을 담당
- (4) 프로젝트의 개발 및 관련 업무서비스
- (5) 기타 업무

2) 기구 및 업무

(1) 시스템부(系統部)

정보센터는 정보산업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서를 시스템부로 통합시켰다.

① 개발업무

개발업무 담당 프로젝트 기술자들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개발자들이다.

- 가. 국가지적재산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보수
- 나. 중국 특허데이터 중·영문판 CD제작
- 다. 중국 특허베이스 및 세계 특허베이스의 관리와 보호
- 라. 각종 대외 정보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

② 운영보수업무

지멘스, 히타치 IBM9672-R14 S390 등을 메인보드로 하는 컴퓨터시리즈 및 자기디스크, Unix시스템, 네트워크를 포함한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정보화시스템과 공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한다. 메인보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주관하는 동시 매주 특허공보 출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가 지적재산권국 월·년간 종합 계획 신청, 라이선스 통계보고서 및 외국과의 교환에 필요한 중국특허 영문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외 중문 특허검색시스템, 일본어, 기타외국어 특허 등 시스템 지원을 담당하며 특허국 내 정보시스템장비 설치, 데이터통신네트워크 및 인터넷 관리업무와 보수업무를 담당하며 각 시스템의 관리한다.

(2) 검색 컨설팅부

검색 컨설팅부는 현재 국가 과학위원회가 인정하는 컴퓨터 검색기구로, 사용자들의 중국 내외 특허검색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컴파일처

컴파일처는 중국 특허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또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자료는 중문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정보가공처

중국특허문헌에 대한 지적재산권국의 안내표기, 입력을 전달하며 대외로 중·영문 타자, 복사 및 대량 데이터를 수집 제공한다.

(5) 발전처

정기적으로 전국적, 지역적인 특허기술박람회 및 국제 전람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업계와의 합작으로 각 중 특허정보발표회, 지적재산권 세미나 등을 조직한다.

(6) 시행처

시행처는 센터의 “중국특허데이터베이스 및 특허시행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허기술 소지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 ① 발명가의 최신 특허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선진서비스 제공
- ② 특허기술 프로젝트 선택 편집
- ③ 중국특허문헌 CD의 애프터서비스 및 기술 컨설팅을 제공

(7) 정보 프로젝트처

인터넷 상 특허정보 서비스의 연구 및 응용을 책임지고 정보망구축에 필요한 모든 하드·소프트웨어솔루션 및 시스템디자인, 종합배선, 네트워크 조절 테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8) 대외업무

특허정보제품(대외 서비스항목 중 정보제품에 대한 소개 참조)을 제공한다.

(9) 정보 컨설팅

특허신청 및 소송과 관련된 컨설팅 제공

관련 기업 발전전략 관련 컨설팅 제공

기업 보유 기술의 업데이트 관련 컨설팅 제공

네트워크 정보 관련 컨설팅 제공

맞춤형 정보컨설팅을 제공

(10) 위탁특허 검색

검색 서비스 즉 중국특허 검색, 세계특허 검색(영문), 중국 특허법률 현황 검색 등의 특허 검색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11) 기기 검색업무 관련 대리번역 전담

① 특허전화조회

전화로 중국특허문헌의 법률현황을 직접 문의하고 향후 특허비용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한다.

② 전람회

독자 혹은 성·시 연합으로 대·중형 특허기술전람회를 개최한다. 그 중 “중국특허기술 박람회 즉 중국특허제품주문회의”는 전국적인 특허기술회의로 매년 베이징에서 열린다.

(12) 특허 프로젝트

센터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특허신청, 특허권 보유, 특허기술의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특허부양기금을 만들었다. 또한 각종 자금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특허기술시행을 앞둔 업체들에 자금경로를 알선하고, 고부가가치의 특허기술을 선택하여 자금을 투자한다.

(13) 특허중개

기술설명 및 시행조건이 좋은 특허프로젝트를 제공하고 기술 중개 서비스를 하고 시장전망이 밝은 특허제품의 홍보 판매를 돕는다.

3) 대외서비스 프로젝트

(1) 정보제품

① 중국 특허 CD

CNPAT CD시리즈, 중문버전과 영문버전이 있고 설명서 데이터베이스, 분류 전문 설명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문버전 CNPAT CD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유일한 중국특허데이터로 외국특허조직 및 주요국가 특허국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한다. CNPAT 제품은 세계 각 국에 널리 전파되었다. CNPAT에는 1985년 이후 중국특허국이 신청·공개한 총 80여 만 개의 모든 특허정보데이터를 포함했으며 매년 8만 여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2) 정보간행물

① 특허시행잡지

전문기술 분야의 우수한 특허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기술소개와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월간으로 발행 때마다 200여 개의 특허항목 소개가 포함된다.

② 신기술제품정보신문

지적재산권국이 주관하고 중국특허정보센터가 주최한다.

③ 특허데이터베이스 세트베이스서비스

중국특허 중문데이터베이스, 이미 공개된 중국특허문헌을 제공(1985년부터 현재까지).

(3) 특허실시 프로젝트 공모

실시조건과 시장전망이 좋은 특허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공모하고 특허 거래의 중개역할을 한다.

그 외 중국특허 영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 사이트구축 및 온라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람회 서비스 등이 있다.

<표 I -9> 대외서비스 프로젝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 |
|---------------------|---|
| 정보제품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시행처 담당자 : 리화(李华) 전 화 : 82021707 팩 스 : 82021697 E-mail : lihua@21nw.com |
| 정보간행물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시행처 담당자 : 리홍(李红) 전 화 : 82021707 팩 스 : 82021697 E-mail : lihong@21nw.com |
| 신기술 제품정보신문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시행처 담당자 : 리신(李新) 전 화 : 68250856 팩 스 : 68254830 E-mail : lixin@21nw.com |
| 사이트구축 및 온라인 특허정보서비스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정보프로젝트처 담당자 : 류우옌신(刘燕新) 전 화 : 62093529 팩 스 : 62093860 E-mail : liuyanxin@21nw.com |



| | |
|-------------------|--|
| 특허데이터베이스 세트베이스서비스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계통부 담당자 : 뤼이자링(吕加令) 전 화 : 62093214 팩 스 : 62019503 E-mail : lvjialing@21nw.com |
| 중국특허 영문 데이터베이스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계통부 담당자 : 뤼이자링(吕加令) 전 화 : 62093214 팩 스 : 62019503 E-mail : lvjialing@21nw.com |
| 특허실시 프로젝트공모.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시행처 담당자 : 탄귀후이(谈国辉) 전 화 : 82021606 팩 스 : 82021697 E-mail : tanguohui@21nw.com |
| 검색서비스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검색처 담당자 : 홍빙(洪兵), 쉬이팡(徐芳), 완충신(万崇新) 전 화 : 62093591 팩 스 : 62019503 E-mail : yushenping@21nw.com |
| 진람회서비스 | 담당기구: 중국특허정보센터발전처 담당자 : 린즈둥(林子东), 리징(李晶) 전 화 : 82021693, 82021694 팩 스 : 82021697 E-mail : linzidong@21nw.com |

3) 국제협작

센터는 이미 EPO(유럽특허국), 영국 Derwent 특허정보회사, 미국 Orbit, Dialog, Questel 등과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다.

(1) 지적재산권연구회

중국 지적재산권 연구회(Chin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CIPS)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주관하는 지적재산권 연구에 종사하는 관련인사 및 기구로 구성된 학술공익사회단체이다. 1985년 국가 체제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중국공업재산권 연구회로 정식 설립되었고, 1990년 중국지적재산권 연구회로 개칭되었다.

본 연구회는 지적재산권지식을 보급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학술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일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① 이론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
- ② 지적재산권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의 지적재산권 법률의식을 고취시킨다.

- ③ 지적재산권 사업자를 장려하고 인재를 추천한다.
- ④ 과학논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개발 및 기술서비스를 접수 위탁한다.
- ⑤ 지적재산권 기술프로젝트를 조직하여 과학기술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한다.
- ⑥ 발명가, 지적재산권 소지자와 지적재산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⑦ 지적재산권 출판물을 출판한다.
- ⑧ 국제 민간학술 교류와 합작을 추진한다.
- ⑨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 ⑩ 본 취지에 부합되는 공익사업을 개최한다.

(2) 일상 사무기구

일상 사무기구인 비서처는 이사장, 부 이사장의 지휘를 받으며 비서장이 주관한다. 비서처는 학술교류부서, 편집부서, 종합부서, 컨설팅부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출판물

정기적으로 《지적재산권》 잡지(격월간)를 출판하여 우편 발송한다.

(4) 분회기구

전국 각 지역의 지적재산권연구회는 중국 지적재산권연구회의 주관 하에 활동을 하며,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분회는 31개이다.

(5) 특허대리인협회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ALL CHINA PATENT AGENTS ASSOCIATION, ACPAA)는 1988년 민정부의 허가로 설립된 전국적인 사회단체이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주관한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 업계의 자율 강화, 부정당한 경쟁을 제지하여 특허대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대외 합작도 추진한다.

- ① 업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특허대리인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 ② 특허대리업무교육과 학술연구활동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대리기구의 년 검사 사업을 협조한다.
- ③ 국가지적재산권국과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특허대리인의 심사 및 직무평가사업을 강화한다.
- ④ 인민법원과 특허관리기구의 특허심판 및 기술검증사업을 협조한다.
- ⑤ 특허대리사업을 선전하고 전국적인 잡지 《중국특허대리》를 출판한다.
- ⑥ 외국 특허대리조직과 교류 합작하며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설립 후 여러 차례 국내외 교류 및 교육활동을 주최했다.

《특허대리인 직업도덕 및 직업기율규범》, 《외국특허대리기구 최저 납입금표준》 등 관리 규정을 반포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위탁으로 《특허대리인 사업증》을 발급하는 한편 매년 특허대리기구의 검사사업에 참여한다.

중화전국특허대리협회 전국회원대표대회는 3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현재 이사 59명, 상무 이사 19명이다. 협회 일반 사무는 비서처에서 처리한다. 그 외 협회는 조직, 상벌, 교육, 비용조정, 국제합작, 전문가, 회간 편집 등 7개 위원회와 화북, 동북, 중남, 화남, 서남, 서북, 고등학교, 부위원회, 중국과학원 등 9개 지회를 설립했다.



이 외에 기관서비스센터, 검색컨설팅센터, 특허심사협회센터, 발명협회 사무실 등 기구도 있다.